

대구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가단1339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인삼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도 담당변호사 서정훈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여현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23. D의 소개로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C의 구주를 경영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1주당 40만 원씩 40억 원에 인수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1주당 4만 원, 총 인수가액 60억 원에 인수하여 피고 회사의 지분 51%를 100억 원에 매수하고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최대주주의 지위를 부여받은 후 현대표(피고 C)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코스닥 상장 후 스탁옵션을 부여하는 것에 동의하며 원고가 피고 C의 구주인수 금액 40억 중 250주 매수비용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2017. 7. 7. 피고 회사의 발생주식 총수가 1,627,000주에서 5,694,500주로, 자본금이 813,500,000원에서 2,847,250,000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9. 13.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분 51% 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 550만 주를 1,800원에 99억 원을 유상증자하고, 경영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피고 C의 구주 28만 주를 18,000원에 50억 4,000만 원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계약금은 1억 원이며, 구주 5,555주를 인수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고, 피고 C은 1차 계약에서 인수한 주식 8,625주(2,500주 + 6,125주)를 합하여 14,180주에 20주를 추가한 14,200주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구주 인수금액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D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 회사의 기업가치가 4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원고에게 회사의 성장 잠재력과 상장 가능성에 대하여 ‘특수한 사업영역이어서 미래가치가 무궁무진하다, 투자 후 상장하면 수십 배의 차익을 볼 수 있다, 상장되면 E처럼 13만 원, F처럼 80만 원에 거래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 C은 원고에게 ‘경북 상주에 있는 G을 특수관계에 있는 B만이 헐값에 살 수 있고 그곳의 부동산과 폐기될 태양광시설의 고철만 하여도 투자금의 몇 배를 회수할 수 있다, 천안시장을 잘 알아 천안의 외국인 전용공단에 회사를 확장신축할 수 있는 H 옆의 큰 부지는 값싸게 살 수 있으므로 부동산만으로도 투자금 이상의 큰 차익을 볼 수 있다’ 등으로 부동산과 고철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회사의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제1차 계약 체결 이후에는 I 등 제3자로부터 실제로 20억 원을 투자받지 않았음에도 20억 원을 투자받았다고 재차 거짓말하여 원고가 결과적으로 이 사건 1, 2차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지분 51%를 150억 원 상당이라는 실제 기업가치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하고 2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는바, 위 2억 원은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거나, 이 사건 제1, 2차 계약은 피고 C의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 이를 취소하는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성장 잠재력과 상장 가능성에 대하여 ‘특수한 사업영역이어서 미래가치가 무궁무진하다, 투자 후 상장하면 수십 배의 차익을 볼 수 있다, 상장되면 E처럼 13만 원, F처럼 80만 원에 거래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향후 상장되면 가치가 상승한다는 점에 대한 과장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고, 사실관계에 대한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며 부동산과 고철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나(피고 C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재무제표는 인터넷 기업검색 등을 통해 검색이 가능한바 위 점만으로는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식인수대금이 기업 가치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 2차 계약의 경우 그 대금은 경영 프리미엄을 감안한 가격이자 경영권 확보를 위한 신주 인수비용을 포함한 가격인 점, 원고는 피고 C이 실제 피고 회사가 20억 원을 추가로 투자받지 않았음에도 투자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또한, 위 2억 원은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하여 피고 C의 구주 인수대금으로 피고 C에게 지급한 돈으로 보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C과 각자 위 돈의 반환을 구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지민